

# 직업병의 진단, 아래도 되는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염 용 태

1948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창설되면서 고민중의 하나가 건강(Health)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었다. 결국 머리를 짜내서 만든것이 지금까지 WHO현장에 명시되어 있는 유명한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불신을 받고 말았다. 완전한 상태의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할 때 건강지표를 쓰는 대신 사망율, 유병율 등의 질병지수를 사용한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건강을 증명한다는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며 호흡기계, 순화기계 등의 항목에 정상이라는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여 건강을 증명한다. 그러나 더욱 웃기는 일이 있다. 비중격에 구멍이 났다고 크롬중독이라고 진단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다. 몇년전에 크롬작업을 하여 뚫어진것으로서 크롬중독의 후유증인데 크롬중독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특히 직업병 분야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

직업병의 진단이라고 해서 의학적으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지 대상이 특수한 작업장에서 특수한 유해요인에 폭로 되는 근로자로서 병의 원인이 작업장에 있으므로, 질병 발생의 경우 사업주 또는 사회의 책임이 수반되며 여기서 야기되는 보상문제까지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의사는 정상치를 벗어나는 검사소견(이상치)을 진단의 근거로 삼고 증상 및 증후를 연결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하였으나 모든 검사소견이 정상이며 단지 요즘 수은의 농도가  $70\mu\text{g}/1\text{㎖}$ 을 때(정상치는  $50\mu\text{g}/1\text{㎖}$ 이하) 이 사람의 두통이 수은중독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인의 질병관리, 조기진단, 또는 건강증진의 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어느 의사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고 의학적 논리에 타당하면 어느 질병이라도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병에 있어서는 일단 진단이 내려지면 질병발생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해자의 개념이 따르기 때문에 상해진단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직업병의 진단 기준이나 지침이 나라마다 특이하게 정해져 있다. 이를 나라에 따른 법의 근간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합동위원회가 1969년에 정한 인체영향평가 카테고리를 근거로 한다.

즉 카테고리 - A : 건강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

카테고리 - B :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지만 급속하게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어 명확한 질병상태에는 이르

지 않는 단계

카테고리 - C : 질병상태에 있으나 회복  
되려는 상태

카테고리 - D :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의  
질병 또는 사망을 일으  
킬 수 있는 단계.

여기서 D에 해당하는 것만을 직업병이라고  
확정하는 것이다.

D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라는 말은 항상  
성(homeostasis)의 소실을 말하는 것으로 치료불  
능의 뜻이 아니다.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도 정  
도가 경미할 경우 B로 분류 하거나 정도에 따라  
C로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규정(노동부)에도 A는 건강자, B  
는 경미한 결함이 있는 건강자, C는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 D는 직업성 질병에 이환된  
자로 정하고 C의 경우는 작업전환이나 근로시간  
의 단축을 권하고 있다.

임상가적 입장에서 개인을 상대로 할 때 이들

C카테고리에서 질병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습관  
이다. 산업장은 어떤 종류이건 유해물이 있게  
마련이어서 여기 오래 근무하면 과폭로의 현상  
으로 어느 검사소견이 정상범위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수은취급 근로자에서 요즘 수은량이 정상  
범위를 넘은 경우가 80%정도이며 이들은 대부  
분 B나 C범주에 해당된다. 이중 수은중독시의  
증상과 관련있는 자도 상당수 볼 수 있으나 항  
상성이 유지되어 작업관리에 주의만 하면 다시  
정상범위로 복귀되며 후유증이 없다. 검사소견  
에 이상이 있다고 직업병자라고 하면 일천만 근  
로자에서 직업병자 아닌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이  
다. 직업병을 전공하려는 의사, 또는 직업병에  
관심 있는 의사에게 노동부 예규에 의한 근로자  
특수 건강진단방법 및 직업병 관리기준(1989)을  
참고하도록 권하고 싶다. “Be careful and sit  
down”하는 평범한 속담이 떠오른다.

